

- '22.05.11. 규제개선을 위한 시·군 간담회 건의(과천시)
- '22.05.20. 규제개선을 위한 시·군 간담회 건의과제 검토결과 제출(공동주택과)
- '22.10.26. 준칙(제17차) 개정(안) 의견조회\* 완료
  - \*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 시·군 보육관련부서로 의견조회 결과 31개 중 30개 시·군 개정(안) 찬성
- '22.11.29.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별도의견 없음)
- '22.12.09. 준칙(제17차) 시행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영업권 보장 및 영유아의 보육받을 권리 보장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가. (생략) (1) ~ (2) (생략)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u>어린이집</u>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1) ~ (5) (생략) 중략 6. 전유부분을 <u>어린이집</u> ,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u>어린이집</u>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1) ~ (5) (현행과 같음) 중략 6. 전유부분을 <u>어린이집</u> ,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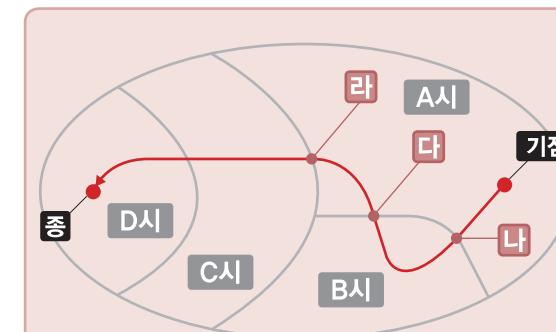
## 03 시내버스 행정구역 경계거리 완화

 추진부서 평택시 대중교통과 ☎ 031-8024-4694

개선배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기점과 종점이 모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둘 이상의 시 · 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법문으로 인해 평택시의 경우 안성IC를 이용하여 서울로 광역버스 운행이 불가한 상황임
    - ① 평택 → ② 안성 → ③ 안성IC → ④ 평택 → ⑤ 오산 → ⑥ 서울



- 기점이 있는 A시 외의 행정구역에서 운행거리의 총합  
- '나~다' + '라~종점' 거리의 합 ≤ 50킬로미터

- 법제처 해석 : A시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부분의 노선길이의 총합으로 계산,  
관할 행정구역을 제외한 노선길이의 총합

- ☞ 해당규정으로 인해 평택시 시내와 인접한 안성IC, 송탄IC 등 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오산IC를 통해 고속도로를 진입하여 광역버스 이동시간 과다소요 및 서비스 수준 저하 발생

## 개선내용



### 개선 전

-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법문이 명확하지 않아 평택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안성IC를 이용하여 서울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



### 개선 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 개정('22. 6. 8.)
  - 운행의 효율성과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등을 이용하여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운행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제2항제2호 개정

## 추진과정



'20. 02. 27 법령해석 질의 회신(법제처→도·평택시)

'21. 03. 26 '21년 상반기 지자체 건의과제(시내버스 행정구역 경계거리 완화)로 제출 (도→ 행안부)

'21. 05. 24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 건의

'22. 06. 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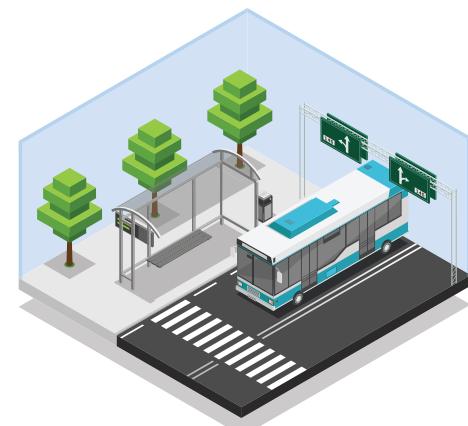
## 개선효과



- 안성IC 또는 송탄IC 등을 경유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신설이 가능해져 평택-서울 간 운행 시간이 대폭 감소하고 출퇴근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

※ 평택~서울간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대폭 단축

- 평택시 내 다양한 기점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신설여건 마련



## 평택 시민들 여객車 운수사업법 개정 '환영'

승인 2022-06-15 16:35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기자페이지 >](#)

평택 시민들이 정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기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등의 운행거리가 50km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서울행 버스노선 신설 근거가 마련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 서울·경기·세종 등 7곳 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등의 운행 거리가 50km를 초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평택지역은 서울행 버스노선 개설 요구에도 노선 신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안중·청북읍에서 서울로 향하는 노선과 고덕동에서 오산·송탄IC 등을 통해 서울로 향하는 경우 모두 50km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성IC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우 평택의 최종 행정경계가 진위면이지만 안성IC를 출발, 진위면에 이르기까지 안성과 용인 등을 지나는 고속도로구간을 운행거리에 포함, 62km로 산정한 탓에 노선을 신설할 수 없었다. 평택 비전·동삭동과 서울 강남을 잇는 6600번 버스도 50km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가까운 송탄IC가 아닌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이동해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행돼왔다.

김성탄씨(35·평택시 안중읍)는 "서울행 버스노선 신설근거가 마련됐다"며 "시외버스 노선이 부족한 불편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선 신설여지가 생겼다. 다만 신규 노선 도입은 준비와 검토 등을 거쳐 2년 이상 소요되며 사업타당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만큼 실제 신규노선 도입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